

<별지 제1호>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할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투자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 1항에 따라 고객님의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총 자산 규모(순자산)] 고객님의 총 자산규모(순자산)은 다음 중 어느 정도 수준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억원 이상				
2. [연간 소득 현황] 고객님의 연간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억원 이상				
3. [재산현황] 고객님의 보유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형별 비중 합계가 100%가 되도록 각 유형별로 1개씩 선택)	3-1(보장성 상품)	<input type="checkbox"/> 0%~9%	<input type="checkbox"/> 10%~19%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49%	<input type="checkbox"/> 50% 이상
	3-2(투자성 상품)	<input type="checkbox"/> 0%~9%	<input type="checkbox"/> 10%~19%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49%	<input type="checkbox"/> 50% 이상
	3-3(대출성 상품)	<input type="checkbox"/> 0%~9%	<input type="checkbox"/> 10%~19%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49%	<input type="checkbox"/> 50% 이상
	3-4(기 타 상품)	<input type="checkbox"/> 0%~9%	<input type="checkbox"/> 10%~19%	<input type="checkbox"/> 20%~29%	<input type="checkbox"/> 30%~49%	<input type="checkbox"/> 50% 이상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고객님께서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기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상품종류)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지급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2(투자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경험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투자경험 없음						
5.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 투자경험]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경험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6. [금융지식 수준 /이해도] 고객님의 금융지식 수준(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7. [취득 및 처분 목적] 고객님의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8. [투자 목적] 고객님은 다음 중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9. [투자예정기간]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예정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10. [기대수익 및 손실감내도] 고객님께서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제한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률 기대 <input type="checkbox"/> 원금의 일부 손실을 감수하며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 <input type="checkbox"/> 원금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수익률(예:주가지수)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 <input type="checkbox"/> 원금 초과 손실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시장수익률(예:주가지수)을 초과하는 높은 수익 추구					
11.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고객님께서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 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취약 금융소비자(고령투자자, 미성년자, 정상적인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은명자 등)를 확인된 경우, 투자 시 유의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등)을 다른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됩니다.					



본인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희망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함)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 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 불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제2호>

투자자성향 분류

-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성향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구 분	성 향	점 수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41점 이상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33점 이상 ~ 40점 이하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25점 이상 ~ 32점 이하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 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17점 이상 ~ 24점 이하
안 정 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16점 이하

<별지 제3호>

적합성 판단 기준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각 정보 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 하고, 이 점수들의 통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 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투자자 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1. 문항별 배점

◆ 1번 [총자산규모(순자산)]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2번 [연간 소득 현황]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총자산 대비 금융상품 유형별 비중] 중복 응답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3-1(보장성 상품)

Scoring에 미포함

- 3-2(투자성 상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3(대출성 상품)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4(기타)

Scoring에 미포함

◆ 4번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경험기간]

- 4-1(상품종류) 중복 응답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5점
⑤로 응답한 경우 6점

- 4-2(투자경험 기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 투자경험 없음

Scoring에 미포함

◆ 5번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본 항목은 일반투자성향 Scoring에 미포함, 파생성향 Scoring에 적용

◆ 6번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5점

◆ 7번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④로 응답한 경우 1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⑥로 응답한 경우 1점

◆ 8번 [투자 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 9번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예정기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10번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④로 응답한 경우 7점

◆ 11번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본 항목은 일반투자성향 Scoring에 미포함

2.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6점)

3. 투자성향 분류

◆ 점수 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16점 이하: 안정형

17점 이상~ 24점 이하: 안정추구형

25점 이상~ 32점 이하: 위험중립형

33점 이상~ 40점 이하: 적극투자형

41점 이상: 공격투자형

□ 투자자 성향 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구분	고객분류
4등급(원금보장형)	만 65세 이상 투자경험 1년 미만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3등급(원금부분보장형)	만 65세 미만 & 투자경험 1년 미만 / 만 65세 이상 투자경험 1년 이상~3년 미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등급(원금비보장형)	기타 일반투자자 장외 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별지 제4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 회사는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함

□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정성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며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 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킹 에러, 쟈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만기 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대한 특정위험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민평사의 평가 등급이 없는 채권 해외채권	BB+이하의 채권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CP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없거나 B 이하 등급		A3- ~ A3+	A1+ ~ A2-	
RP				외화RP	국내 RP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지급형	원금지급형	
주식/ELW ETF/ETN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ELW, ETN, ETF, 해외주식	초고위험에 미 포 함된 국내 주식 종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국내 선물/옵션 해외선물/옵션, FX 마진				
펀드	고위험 자산에 80% 이상 투자	고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	고위험자산에 50%미만 중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	저위험 자산에 60% 이상 투자	
※펀드상품 예시	레버리지펀드, 원금비보장형 ELF	국내외주식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단기 국공채 펀드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위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 분류를 세분화 하거나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추가 분류 가능
-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액이 월 50만원 이하인 소액·적립식 상품의 경우 저위험 상품으로 분류한다.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시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	-------------------------------	--------------------------------	--------------------------------

□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총계		외화자산 총계	
부채총계		외화부채 총계	
연간수출총액		연간 수입총액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에게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자격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자격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등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에게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 인원수 :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전산 시스템 명:

보유 여부			
-------	--	--	--

□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〇〇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법인명)	(직 위)	(담당자)	(서명/인)
-------	-------	-------	--------

□ 신한카드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신한카드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지점 / 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	-------	--------

□ 참고사항

- ①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참고1]의 투자자 확인(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고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별지 제6호>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70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70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주의	경고	위험
- 이자율 스왑 - 옵션매수	- 통화 스왑 - 선도거래	- 기타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I, II, III 단계로 분류함.

<별지 제7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 1조 (목적)

이 보호 기준은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당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 절차를 준용한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 절차를 적용한다.

제 3조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 ①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는 고객보호팀으로 하되, 세부 추진은 개별 운영부서가 담당한다.
- ②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③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 4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당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한다
 1.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을 들 수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 ELF, ELT, 레버리지 펀드와 같은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 등)

2.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 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 5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 ①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 가입 전에 관리직 직원(영업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와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의 사전 상담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2.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5.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 수준 등 고려)
- ⑤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 투자)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가 적용 가능하다.
- ⑥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

제 6조 (상품 개발·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 분석)

-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 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 ②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 ①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8조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조 (내부통제 강화)

- ① 당사는 고령투자자 응대 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스마일 콜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①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없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아래 제1~3호를 안내한다.
 - 1.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등에게 투자 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3.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숙려기간(1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